◉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5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22조에 따른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법 제57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22조에 따른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제28조제2항”을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제28조제3항”을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제28조제3항”을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정한 금지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환경부령 제8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중 “영 별표 1 제11호”를 “영 별표 1 제12호”로 한다.

사. 수은폐기물

제18조의2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은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별표 1 제1호가목 중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하 이 표에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폐형광등 파쇄물”을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한다.

별표 4 제1호 중 “03-09-00 폐형광등 파쇄 잔재물”을 삭제하고, 같은 호 10-13-00 다음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수은폐기물

11-01 수은함유폐기물

11-01-01 수은함유 폐램프

11-01-02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11-01-03 수은함유 폐전지

11-01-99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

11-02-00 수은구성폐기물

11-03-00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별표 4 제2호 중 “51-30-05 폐형광등파쇄잔재물”을 “51-30-05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과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을 포함하되,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미만의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한다(이하 “수은폐기물이 아닌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 중 03-09-00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 10-13-00란 다음에 1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수은폐기물		
11-01	수은함유폐기물		
11-01-01	수은 첨가 폐램프	R-3-3, R-4-1, R-10	해당 없음
11-01-02	수은 첨가 폐계측기기	R-3-3, R-4-1, R-10	해당 없음
11-01-03	수은 첨가 폐전지	R-3-3, R-4-1, R-10	해당 없음
11-01-99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	R-3-3, R-4-1, R-10	해당 없음
11-02-00	수은구성폐기물	R-4-7	해당 없음
11-03-00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별표 4의3 제2호 51-30-05의 폐기물의 종류란 “폐형광등파쇄잔재물”을 “수은폐기물이 아닌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한다.

별표 5 제3호라목2)에 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수은폐기물이 아닌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별표 5 제4호가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해 운반해서는 안 되며, 그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집·운반해야 한다.

가) 수은함유폐기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하고, 용기의 바닥 및 벽면 등에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를 삽입해 운반해야 한다.

나) 수은구성폐기물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이하 “수은전용용기”라 한다)에 넣어 운반해야 한다.

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수집·운반해야 한다.

별표 5 제4호나목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해 보관해서는 안 되며, 그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가) 수은함유폐기물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해 보관해야 한다.

나)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별표 5 제4호다목2)더)를 다음과 같이 한다.

더) 수은폐기물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1) 수은함유폐기물은 회수하여 처리하되, 그 처리 결과 발생한 수은함유폐기물은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미만을 함유해야 한다.

(2)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전용용기에 넣어 영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장소에 관한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저장·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다.

(3)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하거나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분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R-4-7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재생페인트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제2호나목4)의 공업용 도료로 사용해야 하며, 해당 용도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수은구성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은 및 그 화합물의 순도는 95% 이상이어야 하며,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서 금지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별표 7 제5호나목2)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수은회수시설을 이용하여 수은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계량시설 1식 이상

(2) 파쇄·분쇄·절단시설: 수은이 외부로 휘발·유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파쇄·분쇄·절단을 통해 수은과 그 외의 유리 등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

(3) 수은회수시설: 수은함유폐기물에서 수은 및 그 화합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가열장치, 응축장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

별표 9 제3호가목6) 중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열회수시설 및 수은회수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수은회수시설

1) 섭씨 600도 이상인 상태에서 수은폐기물을 배소(焙燒)할 수 있도록 가열장치(수은 회수과정에서 감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압력조절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인 상태에서 배소할 수 있는 가열장치를 말한다)를 갖춰야 한다.

2) 기화된 상태에서 수은을 회수하는 응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수은회수 공정 내부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수은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은 및 그 화합물의 증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5) 수은회수 과정에서 수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유출 시 필요한 수은회수통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은회수시설

가) 수은회수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수은함유폐기물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폐기물을 투입해야 한다.

나) 수은회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도 및 압력을 조절해야 한다.

다) 수은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은 및 그 화합물의 증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에 관한 분류를 신설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에 수은폐기물을 추가하고, 수은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과 수은회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는 등 수은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국 무 총 리 훈 령

◉국무총리훈령 제769호

금융안정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8월 31일

국 무 총 리 인

금융안정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및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업무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금융안정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안정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금융 관련 비상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하 “비상금융조치”라 한다)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행
2. 비상금융조치 집행현장 점검
3. 경제·금융 상황 변동에 대비한 금융 정책 수립
4. 금융시장 위험요인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리·감독
5. 기업 구조조정 관련 기업의 신용위험분석 및 금융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금융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9. 그 밖에 경제위기 극복 또는 민생·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조(구성 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정책총괄과장, 금융지원과장 및 과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과장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④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원단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소속기관의 장은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원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고 할 때에는 미리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